

# B2B 전자결제서비스 이용수수료 합의서

\_\_\_\_\_ (이하 “MP”라 함)과 주식회사 하나은행은 “B2B 전자결제서비스 업무지원 협약서” 제8조 1항에 의거하여 “B2B 이용수수료”를 아래와 같이 정하기로 하며, 수수료는 필요시 양사의 합의에 의해 변경하기로 한다

## 1. B2B 이용수수료 요율

거래금액 (결제금액)	이용수수료 금액 ( <input type="checkbox"/> 정액수수료 <input type="checkbox"/> 정률수수료 )
일백만원 이하	
일천만원 이하	
오천만원 이하	
일억원 이하	
일억원 초과	

## 2. 수수료의 게시 및 고지

- MP는 수수료 요율을 자신의 인터넷홈페이지에 항시 게시하여야 한다.
- MP는 B2B 매매계약 체결시마다 수수료금액 및 부담주체를 거래기업에게 고지하여야 한다.
- 은행과의 합의에 의해 수수료 요율이 변경되는 경우 MP는 그 변경내용을 거래기업 등에 이메일 통지하거나 자신의 인터넷홈페이지에 변경 1개월전부터 1개월간 게시하기로 한다.

20

[MP]

주식회사 하나은행

기 업 명 :

대표이사 :

(인)

(인)

주 소 :

주 소 :

